

수업관리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의 수업이 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동시에 학습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품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7. 3. 1, 2017.9.1.>

제2조 (교무) ① 교무처는 매 학기 원활한 수업관리를 위하여 수강 신청 및 수강변경과 연관된 제반사항을 안내한다.

② 교무처는 매 학기 수업의 일정을 안내한다.

③ 교무처는 수업계획서의 등재 방법을 안내하고 그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등재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서는 등재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수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각 교수가 요구 시 교무처는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반 조건을 준비하고 개선하여야 한다.

제3조 (강의실 관리) 강의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강의의 적정인원

② 강의실배정

③ 수업에 관한 각종 기자재

제4조 (휴. 결강과 보강) ① 수업일수 - 본교 수업일수 15주 이상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 3. 1>

② 임의휴강금지 - 수업의 휴강을 하고자 하는 해당 교과목의 교수는 사전에 휴강 계획을 포함한 휴강 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득한 후 휴강할 수 있으며 보강 후 보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경우(법정공휴일, 개교기념일)에는 휴강 청원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, 보강 후 보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03.01>

③ 출결확인 철저 - 본교에서는 수업시간수의 1/3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.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, 대형 강좌는 지정좌석제를 시행 할 수 있다.<개정 2007.3.1.,2015.3.1., 2017.9.1.>

제5조 (수업운영) ① 교수들은 강의계획과 성적평가 방법을 명시한 강의계획서를 기한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3.1>

② 교수들은 제출한 강의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2015.3.1>

③ 수업의 질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반드시 교수가 평가한 후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.<개정2015.3.1>

④ 보관용 자료로 활용할 보고서 3부를 복사하여 학기말에 성적보고서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80명 이상 강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3. 1.,2015.3.1>

⑤ 연합모꼬지 1일 불참할 경우 신학현장교육, 기독교교육과현장, 현장실습, 학생연주, Career Development Program, 대학생활지도, 창의성프로그램실습, 전공실습, 전공탐색과세미나, 관광산업현장개발 2회 결석 처리한다. 담임교수와 해당학과 교수는 전체 모꼬지 일정에 참석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6.15.>, <개정 2015.3.1>

제6조 (수업시간) <개정 2007. 3. 1>

학부

① 강의시간의 단위는 학부 주간은 학점 당 50분 수업, 야간은 학점 당 45분 수업으로 진

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3시간 수업은 주간에는 2회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, 야간은 3시간을 연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 (수업시수) ① 전임교수는 본교 학부, 대학원을 포함하여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할 경우 및 외부출장 할 시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 9. 12.>

- ② 초빙교수는 12시간 이하, 원어민교수 18시간 이하 <개정 2007. 3. 1., 2011. 6. 15.>
- ③ 겸임교수는 9시간 이하, 시간강사는 6시간 이하 강의하는 것으로 하며, 그 외의 사항은 시간강사관리규칙에 의한다. <개정 2007. 3. 1>
- ④ 전임교수의 수업시간은 주 3일 이상에 걸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6시간을 넘지 못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락을 얻어 초과할 수 있다. <신설 2007. 3. 1. 개정 2011. 6. 15.>

제8조 (수강신청기간) ① 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개강 전에 실시한다. <개정 2007. 3. 1, 2017.9.1.>

- ② 시간강사는 수강신청 2주전에 확정하여야 하며 강사선정은 시간강사 관리규칙에 의한다.

제9조 (성적평가) ① 본교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, 다만, 교환학생, 장애학생, 외국인학생, 및 학점교류생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3. 1.,2014. 12. 31>

- 1. 삭제 <2014. 12. 31.>
- 2. 삭제 <2014. 12. 31.>
- 3. 삭제 <2014. 12. 31.>
- 4. 삭제 <2014. 12. 31.>
- 5. 삭제 <2014. 12. 31.>

- ② 상대평가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단,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절삭한다. <개정 2007.03.01., 2014.12.31., 2015.07.21.>

1. 기본적용

등급	상대평가누적비율<개정 2017.9.1.>
A학점	0 ~ 29%
B학점	0 ~ 68%<개정 2017.9.1.>
C+ 이하	32% 이상 <개정 2015. 6. 26>

2. 수강인원이 8명 이하인 과목, 교직과목, 실기·실습과목, 과목 운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과목 개설 전에 승인받은 과목

등급	상대평가누적비율<개정 2017.9.1.>
A학점	0 ~ 30%
B학점	0 ~ 40%
C+ 이하	30% 이상

3. 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다고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4. 각 학과는 위 상대평가 비율에 따른 등급별 누적 총 학생 수 범위 내에서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과 개설과목의 과목별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신설 2017.9.1.>

- ③ 성적은 입력 기간 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입력하고 출석부 및 성적보고서는 따로 정한

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3. 1>

④ 성적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다.

A+ 4.5(95-100)	A0 4.2(92-94)	A- 4.0(90-91)
B+ 3.5(85-89)	B0 3.2(82-84)	B- 3.0(80-81)
C+ 2.5(75-79)	C0 2.2(72-74)	C- 2.0(70-71)
D 1.0(60-69)	F 0(0-59)	

⑤ 본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는 강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강의계획서에 성적평가유형(상대평가)과 성적평가방법(시험,과제,출석 등의 반영 비율)을 명시하되, 출석은 성적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한다. <신설 2015.3.1.> <개정 2017.9.1.>

제10조 (성적 이의 신청기간) 성적 이의 신청기간을 두어 그 기간 안에 학생이 교수에게 직접 신청하여 정정을 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에 의해 최종 입력된 성적은 정정하지 못한다. 단, 그 이후 성적평가에 교수의 오류가 있을시 학생이 교무처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하여 잘못 된 것이 발견되면 담당교수는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성적을 정정처리하고 학생의 사정으로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정하지 못한다. <개정 2007. 3. 1>

제11조 (폐강과목) 수강신청이 종료가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폐강 대상 교과목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하고 공고 한다.

① 각 학과 정원의 15% 미만

② 삭제<2007. 3. 1>

③ 예능계(교회음악과, 실용음악과)의 전공 관련 과목은 각 전공배정 인원의 25%미만<개정 2017.9.1.>

제12조 (과목폐지) 3회 연속 폐강된 과목을 폐지하고, 학과장에게 통보한다. <신설 2007. 3. 1>

제13조 (기타)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시행한다. <개정 2007. 3. 1>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내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14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반영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4조 ③항, 제5조 ①항, 제9조 ⑥항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